

■ 수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6. 9.>

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제34조 관련)

시설규모(일)	일반적 배치기준	완화된 배치기준
1. 50만 ^{m³} 이상	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2명 이상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3명 이상 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5명 이상	
2. 25만 ^{m³} 이상 50만 ^{m³} 미만	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3명 이상 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4명 이상	
3. 10만 ^{m³} 이상 25만 ^{m³} 미만	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4명 이상	
4. 5만 ^{m³} 이상 10만 ^{m³} 미만	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3명 이상	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2명 이상
5. 2만 ^{m³} 이상 5만 ^{m³} 미만	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2명 이상	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
6. 5천 ^{m³} 이상 2만 ^{m³} 미만	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	
7. 5백 ^{m³} 이상 5천 ^{m³}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	

비고

위 표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완화된 배치기준을 적용한다.

가. 여과처리 없이 소독처리만 하는 정수시설

나. 여과처리를 완속여과(여과지의 설계 여과속도가 5m/일 이하인 것을 말한다)의 방식으로 하는 정수시설